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 영 숙 의원)

의안 번호	26-40
----------	-------

발의년월일 : 2026. 4. .

발 의 자 : 권영숙, 고병준, 권인순,  
남해석, 백남환,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 1. 개정이유

순환열차버스의 요금체계는 성인 5,500원(경로자 3,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다소 가격이 높고 복잡하여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순환열차버스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모든 이용자 1,000원으로 낮추고 단일화하여 이용편의를 높임으로써, 순환열차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순환열차버스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조정(성인 기본료 5,500원 등 대상별 차등 → 전 이용객 1,000원)(별표 1)

## 3.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관광진흥법」 제4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4.3. ~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이 용 요 금 표 ( 제4조 관련 )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비고
1일권	1,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b>이 용 요 금 표</b> ( 제4조 관련 ) (단위 : 원)					[ 별표 1 ] <b>이 용 요 금 표</b> ( 제4조 관련 )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 린 이	구 분	이용요금	비고
	어 른	경로자					
개 인	5,500	3,000	3,500	3,000	1일권	1,0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제9조(위탁운영) - 마포시설공단에 대한 열차버스 운영 위탁 비용(공단전출금)
- 수입발생 요인: 제4조(이용료 징수) - 별표 1 이용요금 개편으로 인한 세외수입 변동

※ 이용요금 인하(5,500원 → 1,000원)로 인해 1건당 수입은 감소하나, 탑승 수요 증가로 총 수입금은 유지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2026년 4월 ~ 2031년 3월 (5개년)
- 가격기준: 2026년 4월 조례 시행 시점 기준
- 주요 가정
  - ① 운행 일수: 연간 208일 (주 4일, 목~일 운행, 1일 12회)
  - ② 수요 가정: 요금 인하에 따른 유도수요 50% 증가 (일평균 41.74명 → 62.61명)
    - 탑승수요 증가율 = 요금인하율(81.8%) × 가격탄력성(-0.61) = 약 50%
    - 가격탄력성: 시내버스(-0.314~-0.46)와 관광교통(-0.92)의 보수적 중간값 -0.61 적용
  - ③ 세입 증가율: 2차년도부터 연 3% 점증 반영
  - ④ 세출 증가율: 2차년도부터 물가상승률 연 3% 반영
  - ⑤ 위탁운영비(세출): 2026년 공단전출금 496,068천원 기준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수입금	13,023	13,414	13,816	14,231	14,658	69,142
	소계(a)	13,023	13,414	13,816	14,231	14,658	69,142
세출	○ 구비	496,068	510,950	526,279	542,067	558,329	2,633,693
	소계(b)	496,068	510,950	526,279	542,067	558,329	2,633,693
□ 총 비용(b-a)		<b>483,045</b>	<b>497,536</b>	<b>512,463</b>	<b>527,836</b>	<b>543,671</b>	<b>2,564,551</b>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483,045	497,536	512,463	527,836	543,671	2,564,551
	구비	483,045	497,536	512,463	527,836	543,671	2,564,551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계	13,023	13,414	13,816	14,231	14,658	69,142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이용료)	13,023	13,414	13,816	14,231	14,658	69,142
합계		<b>496,068</b>	<b>510,950</b>	<b>526,279</b>	<b>542,067</b>	<b>558,329</b>	<b>2,633,693</b>

5. 덧붙이는 의견

- ① 본 비용추계의 세입 및 세출은 향후 운영 실적, 운영 방식 변경 등 사업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② 세외수입은 요금 인하(5,500원→1,000원)로 인해 2026년 기존 목표액(60,000천원) 대비 약 78% 감소(△46,977천원)가 예상되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소비 창출 효과(연간 약 363백만원, 신규 탑승객 4,341명 × 1일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83,677원)가 이를 약 7.7배 상회하므로, 정책적 투자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③ 탑승수요 증가 전망은 가격탄력성 이론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요는 홍보·계절·운영 환경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④ 세출의 위탁운영비는 마포시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주하나
연락처	02-3153-866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이용객 수 추정 근거

항목	내용
현행 일평균 이용객	41.74명 (2025.5.~2026.3., 총 운행일수 260일 기준) = 10,853명/260일
요금 인하율	81.8% (5,500원 → 1,000원)
가격탄력성 적용	-0.61 (시내버스 -0.314~-0.46, 관광교통 -0.92의 보수적 중간값)
수요 증가율(기본)	50% (= 81.8% × 0.61)
변경 후 일평균 이용객	62.61명 (41.74명 × 1.5)
연간 운행일수	208일 (주 4일 × 52주, 목~일 운행)
연간 이용객(1차년도)	13,023명 (62.61명 × 208일)
1일 유효좌석수	168석 (15석×3대 + 11석×1대 = 56석 × 1일 3회전)
좌석 점유율 전망	현재 24.8% → 조례 개정 후 37.2% 예상

※ 수요 시나리오 비교

시나리오	수요 증가율	일평균 탑승객	연간 탑승객
보수적	+25.5%	52.4명 (+10.66명)	10,899명 (+2,217명)
<b>중립(기본)</b>	<b>+50%</b>	<b>62.61명 (+20.87명)</b>	<b>13,023명 (+4,341명)</b>
낙관적	+64.1%	68.5명 (+28.2명)	14,253명 (+5,869명)

2. 세입·세출 산출 근거

구분	산출 근거
세입 (이용료 수입)	• 1차년도: 62.61명 × 208일 × 1,000원 = 13,023천원 • 2차년도부터 연간 이용료 세입 증가율 3% 점증 반영
세출 (운영비용)	• 1차년도: 마포시설공단 전출금 496,068천원 기준 • 2차년도부터 연간 물가상승률 3% 반영 점증

### 3. 인용자료

- ① 가격탄력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대도시의 대중교통수요 영향요인 분석」 (2019): 시내버스 - 0.314, 통합모형 - 0.460
- ② 관광교통 탄력성 - Peng et al.(2014), Journal of Travel Research: 국제관광 교통서비스 평균 - 0.920
- ③ 국내여행 1일 평균 지출액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국민여행조사 4분기 잠정치: 83,677원  
(산출: 국내여행 총지출액 39,540십억원 ÷ 국내여행 총일수 472,537천일)

### 4. 정식운영 개시(2025.5.1.) 후 월별 탑승자수 및 수입금 실적

월	탑승자수	수입금 (원)	운영정보
2025.5.	1,469	6,753,250	화~일(6일)
2025.6.	1,506	6,824,194	화~일(6일)
2025.7.	801	3,604,750	화~일(6일)
2025.8.	1,024	4,533,975	화~일(6일)
2025.9.	1,052	4,469,750	화~일(6일)
2025.10.	1,383	5,676,200	화~일(6일)
2025.11.	1,537	6,013,525	화~일(6일)
2025.12.	510	2,185,750	화~일(6일)
2026.1.	327	1,399,675	목~일(4일)
2026.2.	596	2,461,247	목~일(4일)
2026.3.	648	2,659,000	목~일(4일)
계	10,853	46,581,316	260일

#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들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10. 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2025. 4. 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